

# 산업체 병역특례 지정 기준 완화

'23.1.19(목)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

## 1 소관부처 및 관련법령

- 소관부처 : 병무청
- 관련법령 : 병역법 시행령 제72조,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

## 2 현황 및 문제점

-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은 중소·중견 법인 업체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
  - 또한, 해당 사업장의 제조·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, 제조·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(벽으로 구분되고, 별도 출입문 보유 등)되어야 함

###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

제10조(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)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복무할 공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,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가 10명[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등학교)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. 이하 같다]이상이고 **제조·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**되어야 하며 제조·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.

- 지방소재, 뿌리산업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·중견 기업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필요한 상황
  - 특히, 뿌리산업은 주력산업의 원천기술로 활용됨에도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신규인력 확보가 어렵고 직원의 고령화로 인한 기술단절도 우려

-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3D 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쉽지 않고,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 인력도 활용할 수 없음
- 제조·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규정은 국가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는 산업기능요원 활용에 제약이 되는 규제로 작용
  - 뿌리산업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업무에 따라 사내협력 업체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음
  - 제조업 특성상 생산 공정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별 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
- 또한,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중견기업은 사내협력업체 업무공간(공장신설·생산설비 구축 등)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음

#### 현장애로사례

- ▶ A사는 지방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'22년 처음으로 산업체 병역특례를 신청
- ▶ 병무청 현장실사 진행 후 사내협력업체가 당사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탈락
- ▶ 자동차 부품 생산라인 특성상 공정별로 별도 공간을 만들기도 어려우며,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많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병역특례제도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별도의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것도 무리임

### 3 건의사항

- 지방소재,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·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
- 병역지정업체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분리가 증명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체 제조·사업시설 완전 분리 규정 적용 제외